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시/장소	2024. 3. 21.(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업명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2BL 개발사업(보고)		
신청위치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원		
의결번호	(구조)2024-3-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 분야>

- 구조도면 구조일반사항 구조설계개요 확인하여 오기 정리하기 바람.(공사명, 위치, 재료강도 등)
- 플랫슬래브는 건축구조기준 (KDS 14 20 70 4.1.5.4 보가 없는 슬래브의 철근상세) [그림 4.1-1 보가 없는 슬래브]을 참고하여 주열대 하부철근은 스패 내에서 100%가 연속되도록 배근하고, 주열대 상부보강근의 길이는 0.2m 이상이 되도록 배근하기 바람.
- 내진철근을 사용하는 부재를 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
- 일부구간 파일기초가 적용되었으므로 구조안전확인서와 구조도면 구조설계 개요에 파일기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 바람.
- 최상층 및 지붕층은 용도 구분하여 설계하중을 작성하기 바람.(일반, 조경, 태양광, 냉각탑 등)
- 지하주차장은 운행되는 차량을 확인하여 활하중을 정리하기 바람.(지하1, 2, 3층 층고 7.0m임.)
- 지식산업센터 외부발코니 단차상세(캔틸레버구간, 오픈구간, 비오픈구간 등)는 스케일에 맞춰 상세도 작성하고 구조도면에 추가하기 바람. 외부 발코니쪽 전단보강근은 배치되는 곳을 명확하게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기준층 벽체 및 코아벽체, 지하외벽 부호를 구조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A동 기준층에서 X7, X8열/Y1열 기둥과 연결된 벽체는 구조재가 아니라 하중으로 작용하는 벽체로 보임. 구조부재라면 2층바닥에서 전이가 되어야 하며 비구조재라면 벽체에 인접한 하향식 피난구 오프닝과 함께 구조에 불리한 요소이

므로 상세히 검토하기 바람.

- A동 지상2층 구조평면도에서 X12~X13/Y9~Y10구간 (삼각형) 캔틸레버 슬래브는 구조적인 보완없이 현재 슬래브 배근으로 적정한지 안전성·사용성을 검토하기 바람.
- 구조도면 [S31-113] 43쪽 ‘B동 기준층2 철근배근도(Y-Dir)’ 에서 X33/Y’ 10열 기둥 유무 확인하여 배근 검토바람.
- B동 X32~X33/Y’ 9~Y’ 10열 구간 코아벽체와 나란한 [PD와 복도 경계벽체]는 기준층에서 바닥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벽체이므로 벽체부호 표기하고 지하층에는 벽체 설치되지 않으므로 지상1층 바닥 부재 설계 시 상부층 하중 검토하였는지 확인바람.
- 기준층 플랫폼 플레이트 응력검토시 적용된 하중조합은 허용응력설계와 극한강도 설계 각각의 응력검토 Data를 제시하고 3D모델링에 적용된 횡력에 의한 하중 조합이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기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는 A, B동 각각 구분하여 작성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에서 고유치해석 결과 중 질량참여율은 방향 (X, Y, RZ)도 함께 표기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의 풍하중, 지진하중 및 고유치해석 결과가 “구조심의 발표자료” 및 “구조계산서” 와 일치하도록 수정 바람.
- 상시유입량 저감공법 채택과 관련하여 경제성 외에 구조적, 내구적 특성 비교를 통한 선정 근거 제시 바람
- 굴착 시 발생 가능한 인근 건물과의 구조 안전성 관련 계측 계획 제시 바람
- ACT 충전콘크리트의 충전도에 따른 부재이음부의 좌굴 및 채움확인 관련사항 제시바람.
- 지하주차장 운행 차량 확인하여 활하중 검토하기 바람 B동 X32-X33 / Y’9-Y’10열 구간 벽체를 비내력으로 설계시 전층 슬래브 설계 보완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7항에 따라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행하기 바람. 끝.

2024. 3. 2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